

서울특별시 종로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6. 5. 3.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1. 審査經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6년 4월 25일 · 종로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06년 4월 26일 원안 회부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6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2006. 5. 3) 상정 · 수정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재무국장 김연수)

가. 제안이유

- 지방세법에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 방지 및 체납징수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체납자 명단 공개 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신설을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신설하고,
- 8.31 부동산 정책의 후속 대책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취득세 시가표준액으로 합과 동시에 적절한 수준의 재산세 부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용비율을 연도별 순차적으로 인상하는 반면 서민의 재산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지 않도록 주택의 경우에 한하여 2년간 인상을 유예하도록 하고,
-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으로 구민의 재산세 부담이 과중되고 있는 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15를 인하 조정 함으로써 구민의 과중한 재산세 부담을 경감 하고자 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지방세의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가 지방세법 제69조의2에 마련됨에 따라 이를 심의할 수 있는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신설함(안 제14조의4).
- 현행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을 취득세 시가표준액에 적용비율 50%를 적용하여 산정하던 것을 토지분 및 건물분 재산세 적용비율은 2006년부터 매년 5%씩 인상하고, 주택분 재산세는 2008년부터 매년 5%씩 100%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함(안 제21조, 부칙 제2항).
- 주택분 재산세 현행 표준세율의 100분의 15를 인하 조정함(안 제21조의2제1항제3호나목).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보고자 : 전문위원 김 충 식) — 별첨 검토보고서 참조

4. 質疑 및 答辯 要旨 : 생 략

5. 討 論 要 旨

- 서순보 위원외의 수정안 동의

6. 修 正 案 의 要 旨

- 수정이유

- 모든 법령(조례)은 부칙에서 시행일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시행일 부터 시행하게 되지만,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서 적용대상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적용시점이나 적용대상 또는 신 · 구법(조례)의 적용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특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 조례(안) 부칙을 보면, 2항의 규정에서 ②(유효기간) 제21조의2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1까지 효력을 가진다. 라고 규정하였고, 또한 4항의 규정에서는 ④(유효기간 경과후 적용례) 이 조례 제21조의2제1항제3호나목 개정규정의 유효기간 경과후에는 개정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탄력세율 적용시한을 이중으로 복잡하게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동일한 내용을 2개항으로 중복규정하기 보다는 하나의 항으로 통합하여 알기 쉽고, 간결 · 명확하게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와 같이 ②(적용시한) 제21조의2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2007년 1월 1일부터는 개정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고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하였음.

○ 수정안 본문

서울특별시 종로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 제2항 “(유효기간) 제21조의2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를 “(적용시한) 제21조의2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2007년 1월 1일부터는 개정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로 한다.

부칙 제4항은 삭제한다.

()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부 칙 ①(유효기간) 제21조의2제1항제3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④(유효기간 경과후 적용례) 이 조 제21조의2제1항제3호 나목의 개정규정의 유효기간 경과후에는 개정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②(적용시한) 제21조의2제1항제3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2007년 1월 1일부터는 개정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삼 제>

7. 審 査 結 果 : 수정가결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가결함)

서울특별시 종로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서울특별시 종로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 제2항 “(유효기간) 제21조의2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를 “(적용시한) 제21조의2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2007년 1월 1일부터는 개정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로 한다.

부칙 제4항은 삭제한다.